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무원이 형사소추되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 절차가 중지되면 법원의 판결선고 등으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 군무원이 퇴직할 경우 군무원 신분을 상실하여 징계등을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추 후 징계등 절차 중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형사소추된 군무원을 징계등 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형사소추 후 징계등 절차 중지’ 규정 삭제(안 제105조)

- 1)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군무원이 형사소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등 절차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군무원이 형사소추 후 징계등 절차 중지로 인해 징계등을 받지 않고 퇴직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군무원이 형사소추되더라도 징계등 절차를 중지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함.
- 3)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83조, 지방공무원법 제73조) 및 군인(군인징계령 제8조)에 대한 징계등 절차 중지 사유와 동일·유사하게 규정함으로써 군무원이 형사소추라는 유연한 기회로 징계등 절차를 회

피하는 사례를 방지함과 동시에 입법적 균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9. ~ 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무원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개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 그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제2항 단서 중 “군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 “수사 지연”을 “조사 또는 수사 지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소추로 인하여 중지된 징계등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5조(징계 등의 관리) ① 법 제 39조의2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할 비위(非違) 사실에 대한 형사소추가 있을 때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징계등 절차 진행 중에 형사소추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비위 사실을 감사원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하거나 수사하고 있을 때에는 징계등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 수사기관 등의 수사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감사원 또는 군 수사기관 등은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종결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일반군무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제105조(징계 등의 관리) ①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무원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개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 그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사기관 --- 조사 또는 수사 지연 -----. <삭 제>

<u>통보해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2) 748 - 6818